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4-04

창 원 지 방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5구합2306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원 고	주식회사 A
	소송대리인 법무법인 [redacted]
	담당변호사 [redacted]
	소송복대리인 변호사 [redacted]
피 고	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변 론 종 결	2019. 1. 23.
판 결 선 고	2019. 2. 20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가 2015. 8. 7. 원고에게 한 취득세 172,314,250원, 지방교육세 14,733,020원, 농어촌특별세 7,366,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4-04

이 유

직권으로 살피건대, 피고가 원고에게 한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피고가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,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. 다만,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한다.

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정석원

판사 박수완

판사 현정헌